

2026년 하반기 별정직 채용 공고문

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가스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우수한 인재를 모집합니다.

2026년 하반기 채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을 기반으로 한 능력중심 채용이며, '공정'하고 '투명'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

채용비리 입사자(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자 포함)는 입사 이후에도 징계하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될 예정이므로 반드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NCS(National Competency Standards) : 국가직무능력표준(www.ncs.go.kr 참조)



한국가스공사
KOREA GAS CORPORATION

1 모집개요

□ 모집단위 및 인원 : 총 5명

모집분야	직급	주요직무	모집단위	인원(명)
별정직	3급대우	방호보안·비상계획	① 통합방호보안담당관	2
	6급대우	생산기지운영	② 하역안전관리자	2
		안전보건	③ 보건관리자	1
계				5

※ 직무별 세부내용은 첨부된 NCS직무기술서 참조

※ 공사의 하반기 전체 채용공고 내 2개 이상의 모집분야 및 모집단위에 중복지원 불가

2 채용조건 및 지원자격

1. 채용조건

채용 수준	▶ ① 통합방호보안담당관 : 3급대우 ▶ ② 하역안전관리자, ③ 보건관리자 : 6급대우
	▶ 공통사항 - 급여 및 초임등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을 따름 - 이전 직장 경력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, 군 경력만 최대 2호봉까지 인정
근무지*	▶ ① 통합방호보안담당관, ② 하역안전관리자 :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본부 ▶ ③ 보건관리자 :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

* (근무지) 추후 회사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음

2. 지원자격

□ 공통사항

연령	▶ 제한 없음(단,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)
학력·전공	▶ 제한 없음
병역	▶ 『병역법』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결격사항	▶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첨부1
기타	▶ 2026.11.30.(월)부터 연수원 입소 가능한 자 - 이직 절차 등을 이유로 연수원 입소시기 조정 불가 ▶ 자격, 경력,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 기준 : 접수마감일(2026.09.15.(화)) 기준 유효한 자격(경력산정 마감일도 접수마감일로 하며, 1년은 365일로 산정) - 전형단계별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각 모집분야 및 우대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필수 제출,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(6. 우대사항, 7. 제출서류 참고)

□ 모집분야별 지원자격

① 통합방호보안담당관

자격·경력	▶ 다음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- 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소령 이상이면서, 군인사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기본병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- 경찰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경정 이상이면서, 경찰청 사무분장 규칙에 의거한 경비, 작전, 대테러, 방호, 비상계획 업무 수행 경력 5년 이상인 자
우대사항 ¹⁾	▶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(한국산업인력공단) ▶ 산업보안관리사(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) ▶ 항만시설보안 관련 PFSO 이수증 보유자(한국선급)
경력인정 필수요건	▶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(경력)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및 자격확인 가능 부서명(또는 담당업무)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며,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2의 양식 제출 필요(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) ▶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 - 경력증명서는 2026.01.01.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하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접수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(2026.07.15.이후)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 ▶ '군인사법 제3조에 따른 계급 중 소령 이상 경력자'는 지원자격 확인이 가능한 병적증명서 제출 시 공고일(2026.09.01.)이후 정부24(www.gov.kr)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요망
주요직무	▶ 국가보안(중요)시설 “가”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에서 아래 업무 수행 - 비상대비(충무계획, 을지태극연습, 비축자재관리 등) · 경비(경비인력 관리, 당직 등) · 보안(문서, 인원, 시설 등) · 시설통합방호 · 예비군 · 민방위 관리 - 그 밖에 부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일반 서무 및 행정지원 업무 등

② 하역안전관리자

자격·경력	▶ 다음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자 - 해기사(항해사·기관사 또는 운항사) 3급 이상 유효면허 소지자 - 총톤수 3천톤 이상의 LNG운반선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승선한 경력자 ·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: 3년 이상 ·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: 2년 이상 ·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: 1년 이상 * 수 종의 면허 소지자의 경우, 최고등급 면허기준 승선년수 이상
-------	---

1) 서류, 필기전형 시 우대하지 않으며, 직무면접 시 참고자료로 제공



경력인정 필수요건	▶ 경력은 <u>승무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</u> - 승선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'26.01.01. 이후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만 인정 * 승무경력증명서상 「총톤수」, 「해기면종」 및 「승선기간」으로 경력기간 산정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접수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(2026.07.15.이후)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
주요직무	▶ LNG선박의 입·출항 및 하역관련 현장안전관리 ▶ 현장작업 안전관리 등 생산설비 운영 지원 ▶ 기타 LNG하역 및 항무관련 업무 등

③ 보건관리자

자격·경력	▶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「간호법」 제4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로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
경력인정 필수요건	▶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사본(직인필수)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개인이 발급받은 보건관리자 선임확인서를 필수제출 ▶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(경력)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<u>근무기간 및 자격확인 가능 부서명(또는 담당업무)이 반드시 명기</u>되어야 하며,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2의 양식 제출 필요(확인 불가 시 경력 불인정) ▶ 경력은 <u>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중복되는 기간만 인정</u> - 경력증명서는 2026.01.01.이후 발급분을 제출해야 하며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접수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(2026.07.15.이후) 발급분을 제출해야 함
주요직무	▶ 보건관리 법정 업무(「산업안전보건법」시행령 제22조) ▶ 「의료법」에 정한 간호사의 일반 업무(「의료법」 제2조) ▶ 해당 사업소 보건업무 지도, 건강관리실 운영 및 관리 등

**3 전형단계 및 일정**

※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

단계	내 용	일정 및 장소(예정)	합격기준
지원서 접수	○ 채용홈페이지(https://kogas.incruit.com) 온라인 접수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	□ 접수기간(채용홈페이지) - 2026.09.08.(화) 17:00부터 2026.09.15.(화) 17:00까지	-
서류 전형	① 지원자격(적부) ② 입사지원서(적부) - 자기소개서 부적격자 불합격처리	□ 합격자 발표(채용홈페이지) - 2026.10.02.(금) 17:00 이후 - 필기장소, 시간 및 준비물 안내	적격자 전원선발
필기 전형	① 인성검사(적부) - 인성검사 부적격자 필기 점수 미산출 ② NCS직업기초능력(100%) + 가점 합산 고득점자순	□ 필기 시험일자 및 장소 - 2026.10.18.(일) - [장소] 서울 □ 합격자 발표(채용홈페이지) - 2026.10.26.(월) 17:00 이후 - 면접장소, 시간 및 제출서류 안내	모집인원의 3~5배수선발 ·1명모집:5배수 ·2명모집:3배수
면접 전형	① 직무면접(50%) + 직업기초면접(50%) + 가점 합산 고득점자순 ② 제출서류 확인(적부) - 필기전형 합격 시 안내된 제출서류 진위확인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 검토 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	□ 면접 일자 - 2026.11.10.(화)~12.(목) 中 1일 □ 합격자 발표(채용홈페이지) - 2026.11.20.(금) 17:00 이후 - 합격자 정보입력 향후일정 안내	모집인원의 1배수선발
연수 · 임용	① 신원조사(적부) ② 교육연수(적부)	□ 연수원 입소일자 - 2026.11.30.(월) - 교육연수 관련 내용 추후 안내 □ 임용일자 - 2026.12.28.(월)	연수평가결과 60점 미만 미수로 처리

<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(우선순위 순) >

- 필기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 우선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
- 면접전형 : ①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 ⇨ ② 장애인 ⇨ ③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
⇨ ④ 필기총점(가점 합산) 고득점자 ⇨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

4 단계별 채용전형 안내

1. 입사지원서 접수

□ **접수기간 : `26.09.08.(화) 17:00 ~ `26.09.15.(화) 17:00**

- 채용홈페이지(<https://kogas.incruit.com>)를 통한 **온라인 접수**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- 필기시험 장소는 서류전형 발표 후 공지 예정이며, 공사 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될 수 있음

□ **입사지원 시 유의사항**

- 하반기 전체 채용공고 내 2개 이상의 모집분야 및 모집단위에 **중복지원이 불가**하며, 중복지원 사실 발견 시 입사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
 - ※ 하반기 고졸 채용형 인턴, 일반직(신입), 일반직(경력), 연구직 및 별정직 채용공고 간 중복지원 불가
 - ※ 본 채용공고 내 각 모집분야·모집단위 중복지원 불가
- 입사지원서는 **최종제출을 완료하여야 입사 지원한 것으로 인정**하며, 임시저장 및 수정 후 최종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입사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최종 제출했는지 확인 필요
- 입사지원 마감 직전에는 다수의 지원자 동시접속으로 인해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서를 미리 최종제출(접수기간 연장불가, 마감시간 이후 지원서 수정 및 확인불가)
-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은 **추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**하고 **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**할 수 있으므로, **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**
- 입사지원서의 **기재착오,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취소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**하여 작성
 - ※ 개인인적사항(성명, 생월일 등), 자격증정보 등 미기재·오기재로 인한 정보 불일치의 경우 해당 자격증 미인정 처리되므로 입력유의
- 암호화된 서류 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**모든 제출서류는 암호화 해제 필수**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동암호화 등 주의)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여 타인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

2. 서류전형

□ **선발인원 및 선발방법** : 적격자 전원선발

□ **평가요소 및 평가방법**

평가요소	평가방법
① 지원자격(적부)	지원자격(경력인정 필수요건, 자격 등) 적격여부 판단
② 입사지원서(적부)	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) 작성 내용에 대하여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기준 해당여부 판단 첨부3

□ **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 기준**

구 분	심사 기준
공란/글자 수 미충족	▶ 문항 중 1개 항목 이상 미기재하거나 문항 당 25% 미만 기재한 경우
동일/유사항목 붙여넣기	▶ 문항 중 2개 항목 이상의 내용이 일정수준 이상 동일한 경우
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	▶ 무의미한 글자의 나열, 신문기사, 노래가사 등 작성한 경우 ▶ 질문 내용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작성한 경우
동일 단어/문장 반복	▶ 1개 항목 이상 특정 단어-문장이 전체내용의 20% 이상 반복되는 경우 (예시) 한국가스공사, 한국가스공사 / 저는 000입니다. 저는 000입니다.
타 기관명 기재	▶ 자기소개서 내용이 타 기관에 대한 입사지원 내용인 경우 (예시) 공사 인재상이 아닌 전혀 다른 내용 작성, 타 기관에 지원한다는 내용
지원자 간 표절	▶ 지원자 간 입사지원 내용이 일정수준 이상 중복되는 경우

※ 공란/글자수 미충족, 동일단어/문장 반복 기준 : 글자 수 기준, 띄어쓰기 포함

3. 필기전형

□ **선발인원** : 모집인원의 3~5배수 선발

※ 분야별 모집인원 1명 : 5배수 선발 / 모집인원 2명 : 3배수 선발

□ **선발방법** : 인성검사 적격자 대상 NCS직업기초능력(100%) + 가점 합산
고득점자 순 선발

□ **평가요소 및 평가방법**

- **인성검사(적부)** :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,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하며, 적격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
- **NCS직업기초능력(100점)** :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, 특정유형의 단일 형태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/장문형, 연산/자료분석형, 추론/분석형 등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

구분	출제 범위
별정직	의사소통능력, 수리능력,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

※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

< 필기전형 과락기준(배수무관 불합격처리) >

- NCS직업기초능력 **6할미만** 득점 시
(단,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**6할미만** 득점 시)

4. 면접전형

- ☐ **선발인원** : 모집인원의 1배수 선발
 - ☐ **선발방법** : 직무면접(50%) + 직업기초면접(50%) + 가점 합산 고득점자 순 선발
 - ☐ **평가요소 및 평가방법**
 - **직무면접(100점)** :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 또는 상황에 대해 응시자 개인별 일정시간(약 20~30분)동안 워드프로세서 등을 활용하여 자료작성 후 주제 발표
 - **직업기초면접(100점)** : 공사 핵심가치,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기반으로 개인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역량 평가
- ※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

< 면접전형 과락기준(배수무관 불합격처리) >

- 직업기초면접 **4할미만** 또는 직무면접 **4할미만** 득점 시
- 직업기초면접 + 직무면접 합산 **평균 6할미만** 득점 시
(단,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**6할미만** 득점 시)

5. 결과발표 시 안내 사항

구분	서류전형	필기전형	면접전형
합격자	• 필기장소, 시간 및 준비물	• 면접일정 및 집합장소 • 제출 서류 안내 등	• 연수원 입소일 및 준비물 • 합격자 정보입력 등
불합격자	• 적격자에 한해 전형별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		

6. 교육연수

- ☐ **교육연수평가** : 사전 공지기준에 따라 교육연수평가 60점미만 시 마수료 처리

5 예비합격자 운영

- **예비합격자 운영방안** : 각 전형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* 전원 예비순번 부여
- * 적격자 : 과락,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, 인성검사 불합격, 전형 결시,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

전형단계	예비합격자 운영방법
필기전형	▶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(초일 불산입)까지 면접전형 응시여부 사전확인 이후 응시포기 각서 첨부4 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합격자에게 순번에 따라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
면접전형	▶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연수 종료일 까지 입사포기 각서 첨부5 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의사를 밝히는 자가 나타날 때 까지 추가합격 통보하며 통보 시점 1주일 이내 입사가 가능한 자에 한하여 추가합격 처리

< 입사포기각서 미제출,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>

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,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

- 연수원 입소 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 사유서 제출 없이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- 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,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
6 우대사항

※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해당사항 입력 (미입력 시 우대불가)

대상	우대요건	우대내용	비고
취업지원대상자 (국가보훈)	◦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	◦ 전형단계별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 - 단,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을 부여	1개이상 과목 점수 4할미만 시 미적용
장애인	◦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장애인 ◦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	◦ 면접전형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	-

7 제출서류

- 제출서류(원본)는 **면접전형 당일 제출**하며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
- 경력증명서, 승무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외한 각 전형의 제출서류는 **공고일(26.09.01.)이후 발급분**에 한하여 인정
 - 각종 제출서류는 **관계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**하며, **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동안 관리하기 위해** 모든 지원자에게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예정

대상		제출서류
입사 지원자	공통	○ 자격 또는 면허 증명가능서류 사본 1부(파일 업로드) ○ 경력증명서(승무경력증명서)(26.01.01 이후 발급분) 각 1부(파일 업로드) 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26.07.15 이후 발급분) 1부(파일 업로드) ※ 유의사항 자격 및 경력확인에 필요한 이름, 생월일, 자격증번호 등을 제외한 인적사항(사진, 성별, 나이, 주민등록번호, 출신지 등)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
	해당자	○ [보건관리자]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한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사본(직인필수)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개인이 발급받은 보건관리자 선임 확인서 1부(파일 업로드) ○ [통합방호보안담당관] 병적증명서(소령 이상 해당자) 1부(파일 업로드)
필기 전형 합격자	공통	○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 증빙서류 각 1부 - 자격 또는 면허증, 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승무경력증명서, 보건관리자 선임 보고서 또는 보건관리자 선임 확인서, 우대사항 서류 등 ○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등 전체 항목 포함하여 발급) 1부 - 군복무를 하였으나 주민등록초본 상에 병역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추가제출
	해당자	○ [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]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○ [장애인]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(본인대상) 또는 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(본인대상) 1부 ※ 복지카드, 장애인등록증 등 불인정
임용예정자		○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부 ○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○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(직장제출용) 또는 채용 신체검사 결과지 1부 ○ 채용 신체검사 영수증(신규검사자) 1부

※ 상기의 제출서류 외에도 전형단계별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8 유의사항

1. 이의신청 및 채용서류 반환 관련

□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

- 신청방법 :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절차공지
- 신청기한 :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17:00 까지

□ 채용서류 반환 · 파기 및 보관

○ 채용서류 반환·파기

- 대상/서류 : 면접탈락자 / 면접 시 제출한 서류
- 접수 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
- 접수 절차 : **첨부6**의 양식 작성 후 공사 방문 제출, 혹은 recruit@kogas.or.kr 송부
- 후속 조치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제출 서류 파기

○ 채용서류 보관

- 보관대상 : 최종 채용된 직원과 관련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,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한 불합격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 등
- 보관기간 : 영구보관

2. 블라인드 채용 관련 **첨부7**
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성명, 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
(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됨)

-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, 경력과 관련한 사항 (회사명, 근무부서, 학력 등)은 블라인드 처리 대상 아님

-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하는 주민등록상 생월일은 각 채용전형 진행 시 본인 확인용도로만 활용

3.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관련

- ☐ 허위서류제출,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**피해자 발생 시** 해당 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**5년간 구제**
- ☐ **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** :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·구제
 - **서류/필기전형** :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차기 채용 동일분야에 필기/면접 전형기회 부여(1회 限)
 - **면접전형** : 채용비위 사실 확인 시 피해자는 즉시 면접심사에 추가합격 시키고 신원조사 등을 거친 후 최종합격 처리

4.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관련 첨부8

- ☐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상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여부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
- ☐ 편의지원 신청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유형·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(시험당일 요청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)
- ☐ 의사진단서/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 병원)**에서 해당 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**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** 인정
- ☐ 편의지원 신청자는 관련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

5. 입사 관련 유의사항

- ☐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·변조제출, 채용 관련 부정청탁 또는 비위연루, 각 전형 단계별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(입사 이후 적발 시 징계하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)하고 향후 **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**

- 채용 단위별 지원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거나,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- 각 전형별 적격자에 한해 전형별 점수공개 및 예비순위를 부여하며, 부적격자는 전형별 점수 미산출 및 예비순위 미부여
 - * 적격자 : 과락,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, 인성검사 불합격, 전형 결시,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
- 각 전형 시 **사진·생월일·성명이 확인 가능한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**해야 하며, 인정신분증 미소지자 및 학생증, 자격증 등 기타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 불가(모바일 신분증 응시 가능)

< 인정신분증 >

- 주민등록증(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가능)
- 운전면허증
- 여권(유효기간 만료 전 신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)의 경우 '여권정보증명서' 추가 소지 필수)
- 국가보훈등록증

※ 단, 2008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학생증, 청소년증,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나, 생월일이 명기되어 있고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정

9 채용문의

- 채용콜센터 : [1899-9252](tel:1899-9252) (운영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6시)
- 채용홈페이지 : <https://kogas.incruit.com> 질문하기 게시판
-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**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**바라며, 기타 문의사항은 **채용홈페이지의 채용 공지 및 FAQ**를 참조

첨부 1
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

제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,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<삭제 2021.11.16.>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1.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, 직권면직 또는 파면·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1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1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


첨부 2

경력증명서

경 력 증 명 서

성명		생월일		연락처	HP : E-mail :	
증 명 사 항	재 직 기 간			소속 및 직위(급)	담당업무내용 (구체적으로 기재할 것)	비고
	년 월 일- 년 월 일				모집단위별 지원자격(경력)을 명확히 기재 예)법무업무	

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기 관 명:

주 소:

전화번호:

대 표 자:

사업자등록번호:

직인

※ 모집단위별 지원자격(경력) 확인불가 시 경력 불인정

※ 발행기관의 직인 필수

첨부 3

자기소개서 항목

① **(지원동기)** KOGAS에 지원한 동기와 본인이 지원분야(직무)에 지원한 이유를 구체적 사실에 기반하여 기술해 주십시오. (약 500자 이내)

② **(경력기술)** 지원 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전문성(경력·지식·기술 등)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. 아울러, 그러한 전문성이 지원분야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실제 업무 수행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함께 기술하여 주십시오. (약 750자 이내)

③ **(직무수행계획)** 지원 분야에 쌓은 전문성(경력·지식·기술 등)과 타인과 차별될 수 있는 본인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입사 후 직무수행 방향 및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. (약 750자 이내)

④ **(갑질인식)** 직원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갖고 갑질근절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. (약 500자 이내)

⑤ **(KOGAS 핵심가치)** KOGAS의 핵심가치 및 이에 기반한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핵심 가치	기반 역량		신인재상
안전 우선	책임감, 안전의식, 고객우선	→ '책임 실천인'	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완수하며, 안전우선 ESG 가치 실현을 책임감 있게 실천하는 인재
미래 주도	전문성, 미래지향, 변화와 혁신	→ '혁신 전문인'	최고의 전문성 기반으로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를 통찰하고 혁신하여 기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인재
실용 지향	실행가능, 문제해결, 실용과 실효	→ '실용 주도인'	실용적 사고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여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재
소통 협력	신뢰, 소통·협업 능력	→ '소통 협력인'	상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조직의 공동목표 달성을 견인하는 인재

위 네 가지 중에서 본인의 역량과 부합하는 한 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타인과 차별화될 수 있는 본인의 핵심역량을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. 또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기업으로서 KOGAS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함께 고려하여 입사 후 실천할 목표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. (약 750자 이내)



첨부 4

응시포기 각서 양식

응시포기 각서

☐ 성 명 :

☐ 생 월 일 :

☐ 지 원 분 야 :

☐ 수 험 번 호 :

위 본인은 귀사의 2026년 하반기 별정직 채용에 지원하여 필기전형
합격을 통보 받은 바 있으나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응시를 포기하고자
응시포기 각서를 제출하며, 본 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
않겠습니다.

※ 사유 :

2026년 월 일

성 명 : _____ (인)

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



첨부 5

입사포기 각서 양식

입사포기 각서

☐ 성 명 :

☐ 생 월 일 :

☐ 지 원 분 야 :

☐ 수 험 번 호 :

위 본인은 귀사의 2026년 하반기 별정직 채용에 지원하여 합격을 통보 받은 바 있으나,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사를 포기하고자 입사포기각서를 제출하며, 본 각서 제출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※ 사유 :

2026년 월 일

성 명 : _____ (인)

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



첨부 6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첨부 7

블라인드 채용 안내

□ 블라인드 채용

-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(성별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관계, 나이 등)에 대해 입사지원서 상 기재란이 없으며,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답변시 언급 금지

□ 블라인드 항목(작성금지 항목)

- **개인신상정보** : 성명, 생년월일, 신체조건, 주소, 출신지, 가족관계, 출신학교 등
 - 장애·취업지원대상자(보훈)·지역인재 등 우대가점 관련 항목은 해당여부만 체크
- **경력 사항** : 이전 직장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금지
 - 자격요건으로 일정한 경력을 요구하는 경우, 경력과 관련한 사항(회사명, 근무부서, 학력 등)은 예외

□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전형 시 블라인드 처리 위반사례

구분	위반사례
성명	▶ “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” (성명 작성 및 언급 금지)
성별	▶ “저는 남중남고를 나와서....” (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작성 및 언급 금지)
연령	▶ “저는 한국가스공사가 10주년이 되던 해 태어났습니다” (연령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 작성 및 언급 금지)
학교명	▶ “관악산 아래 위치한 학교를 다니면서” (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문구 작성 및 언급 금지)
가족관계	▶ “한국가스공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아버지” (가족 및 친인척의 신분 작성 및 언급 금지)
출신지역	▶ “대구에서 태어나 자라왔습니다” (출신지역 작성 및 언급 금지)
이전직장명	▶ “저는 이전에 한국가스공사에서 3년 간 근무했습니다” (이전직장명 작성 및 언급 금지)



첨부 8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					필기전형	
장애유형 및 정도			필기시험		비고	
			편의지원 내용	증빙서류		
지체 장애인	상지	공통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	
	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·[선택형 시험]답안지 대필	-	기존 1~3급	
	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-	기존 4~6급	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기존 1~6급	
뇌병변 장애인	공통	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·별도시험실 배정(좌석간격 조정)	-	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 ·[선택형 시험]답안지 대필		기존 1~3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	의사 진단서 (원본)	기존 4~6급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		
시각 장애인	공통		·확대문제지, 확대답안지,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		
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	·좋은눈의 시력이 0.04이하인 사람	·시험시간 연장(선택형 1.5배)	-	기존 1~2급	
	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-	기존 3급 2호	
		·좋은 눈의 시력이 0.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기존 3급 1,2호	
	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 4급 2호	
		·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		-		
		·좋은눈의 시력이 0.2이하인 사람		-	기존4,5급 1호	
		·나쁜눈의 시력이 0.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이 0.3이하인 사람		의사진단서 (원본)	기존6급 중 좋은 눈 시력 0.3이하	
		·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		·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		기존 5급 2호, 6급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서면자료 제공 ·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		기존 2~6급	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

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* 확대문제지 : A3 규격의 118%(14point)

* 확대답안지 :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



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				면접전형
장애유형 및 정도			편의지원 내용	비고
지체 장애인	상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 ·관련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	하지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	
뇌병변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 ·관련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시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전담도우미 지원 ·관련서식 확대 제공	기존 1~6급
청각 장애인	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/ 심하지 않은 장애인		·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·의사전달보조요원(수화통역사, 속기사 등) ·관련자료 등 서면제공	기존 2~6급
* 면접시험 편의지원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한 증명서 혹은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				